

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정빈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23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2월 18일

발 의 자 : 송정빈, 김정환, 김제리,  
송명화, 김정영, 김태수,  
유정희, 최정순, 김광수,  
김생환, 김기덕 의원 (11명)

## 1. 제안 이유

-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별로 구성·운영하고 있으나 현 수도조례는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민원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가 어려우며, 현행 조례 위반 시 제재의 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 조문의 해석이 난해하고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에 대한 반감 등으로 민원갈등을 유발하고 있음.
- 따라서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요금 관련 민원의 마지막 구체책인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고, 과태료 부과 조문과 처분기준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 골자

- 가.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심의규정을 명확하게 함(안 제27조제3항, 제27조제3항4호)
- 나. 과태료 규정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(안 제44조제2항 삭제)
- 다. [별표 4]를 단순화 하도록 함.

## 3. 참고 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3항 중 “지나치게 많이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”를 “상수도요금의 부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기타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44조제1항 중 “사용료 또는 분담금”를 “사용료”로 한다.

제44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,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.

[별표 4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〈별 지〉

[별표 4]

### 과태료 처분 기준표(제44조제1항 관련)

위반내용	과태료 처분 내용
1.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	1. 가정용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2. 기타업종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
2.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	
3. 사설소화전을 소방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	
4. 효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를 사용	
5. 타인의 전용·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축물 및 토지로 급수	1. 가정용 : 25만원 2. 기타업종 : 50만원
6. 정수처분 중 무단으로 급수	1. 가정용 : 15만원 2. 기타업종 : 30만원
7.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	1. 가정용 : 15만원 2. 기타업종 : 30만원
8. 영리를 목적으로 수돗물을 판매·공급	30만원
※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.	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7조(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<u>지나치게 많이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</u></p>	<p>제27조(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상수도요금의 부과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하나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기타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
<p>제44조(과태료)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<u>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4조(과태료) ① -----</p> <p>----- <u>사용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② 제1항의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경우 중 혼용사용은 별표 2의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수도물을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, 혼용사용량 중 요율이 높은 업종에 사용한 량에 대해서만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.</p> <p>③ 시장은 급수를 몰래 쓴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⑤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</p>	<p>〈삭 제〉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.</p>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(별표4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태료 처분 기준표(제44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 text-align: center;">과태료 위반내용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가. 사기 등 부정 한 방법으로 수도 요금 또는 시설분 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나.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급수 도용</td> <td rowspan="5">                     1. 가정용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                      2. 기타업종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               </td> <td rowspan="5">                     1. 가정용 : 25만원                       2. 기타업종 : 50만원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2.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</td> </tr> <tr> <td>3.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</td> </tr> <tr> <td>4.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</td> </tr> <tr> <td>5.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</td> </tr> <tr> <td>6. 징수처분 중 무단사용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1. 가정용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                      2. 기타업종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                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1. 가정용 : 15만원                       2. 기타업종 : 30만원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7.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1. 가정용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                      2. 기타업종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                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1. 가정용 : 15만원                       2. 기타업종 : 30만원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8.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</td> <td></td> <td>30만원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                   ※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.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태료 위반내용	가. 사기 등 부정 한 방법으로 수도 요금 또는 시설분 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	나.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	1. 급수 도용	1. 가정용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 2. 기타업종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	1. 가정용 : 25만원  2. 기타업종 : 50만원	2.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	3.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	4.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	5.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	6. 징수처분 중 무단사용	1. 가정용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 2. 기타업종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	1. 가정용 : 15만원  2. 기타업종 : 30만원	7.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	1. 가정용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 2. 기타업종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	1. 가정용 : 15만원  2. 기타업종 : 30만원	8.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		30만원	※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.			<p>(별표4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태료 처분 기준표(제44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위반내용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과태료 처분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</td> <td rowspan="5">                     1. 가정용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2. 기타업종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2. 수도계량기의 작 동을 방해하거나 훼손</td> </tr> <tr> <td>3. 사설소화전을 소 방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</td> </tr> <tr> <td>4. 효율이 높은 업종 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를 사용</td> </tr> <tr> <td>5. 타인의 전용·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 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축 물 및 토지로 급수</td> </tr> <tr> <td>6. 징수처분 중 무단 으로 급수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1. 가정용 : 15만원                      2. 기타업종 : 30만원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7.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 또는 무단이설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1. 가정용 : 15만원                      2. 기타업종 : 30만원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8. 영리를 목적으로 수돗물을 판매·공급</td> <td>30만원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                   ※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.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반내용	과태료 처분 내용	1.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	1. 가정용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 2. 기타업종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	2. 수도계량기의 작 동을 방해하거나 훼손	3. 사설소화전을 소 방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	4. 효율이 높은 업종 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를 사용	5. 타인의 전용·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 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축 물 및 토지로 급수	6. 징수처분 중 무단 으로 급수	1. 가정용 : 15만원 2. 기타업종 : 30만원	7.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 또는 무단이설	1. 가정용 : 15만원 2. 기타업종 : 30만원	8. 영리를 목적으로 수돗물을 판매·공급	30만원	※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.	
과태료 위반내용	가. 사기 등 부정 한 방법으로 수도 요금 또는 시설분 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	나.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급수 도용	1. 가정용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 2. 기타업종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	1. 가정용 : 25만원  2. 기타업종 : 5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. 징수처분 중 무단사용	1. 가정용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 2. 기타업종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	1. 가정용 : 15만원  2. 기타업종 : 3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.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	1. 가정용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 2. 기타업종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	1. 가정용 : 15만원  2. 기타업종 : 3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.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		3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반내용	과태료 처분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	1. 가정용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 2. 기타업종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수도계량기의 작 동을 방해하거나 훼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사설소화전을 소 방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효율이 높은 업종 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를 사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타인의 전용·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 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축 물 및 토지로 급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. 징수처분 중 무단 으로 급수	1. 가정용 : 15만원 2. 기타업종 : 3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.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 또는 무단이설	1. 가정용 : 15만원 2. 기타업종 : 3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. 영리를 목적으로 수돗물을 판매·공급	3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